

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현행법의 목적 규정에 ‘4에이치활동 지원을 통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 도모’를 추가하고, 4에이치활동의 지원 대상을 종전 ‘청소년’에서 ‘아동·청소년·청년농업인’으로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1조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병 섭)